

제 6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23조 【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과 수급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 체결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 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공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 하여야 한다.
 - ④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 24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때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 인정서에 명시된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5. 계약 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중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다.
 - ③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⑤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 25조 【월 이용료】

- 1. 월 이용 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 2.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 3. 2025년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4. 방문요양 일일 방문 시간당 수가 (단위 원)

분류	2025년 수가	본인 부담금(15%)	본인 부담금(9%)	본인 부담금(6%)
30분 이상	16940	2541	1524	1016
60분 이상	24580	3687	2212	1475
90분 이상	33120	4968	2981	1987
120분 이상	42160	6324	3794	2530
150분 이상	49160	7374	4424	2950
180분 이상	55350	8303	4982	3321
210분 이상	61670	9251	5551	3700
240분 이상	68030	10205	6123	4082

- 5. 본인부담금 납부
기관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자의 급여비용을 산출하여 익월 5일까지 전달하여 이용자는 익월 10일까지 기관이 정하는 계좌로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94-0251-04) 고운손 재가노인복지센터

제 26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병원 동행 시 병원비 및 제반 비용에 따른 모든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3.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요양 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한다.
- 4. 수급자, 보호자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제 27조 【신원인수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5.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제 28조 【신원인수의 의무】

1.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 의무
2. 보호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제공변경에 동의 해야 한다.
7.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 29조 【이용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 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생활 상담 및 조언 의무
 - ⑤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 ③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서비스 이용
 - ④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및 센터의 운영규정 준수
3. 보호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부담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 진료비 등 소요 비용납부에 대한 책임 의무

제 30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각호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이용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의 각호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③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
- ⑦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⑧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때 계약 해지 의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